# 2020년도 제5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### I. 회의 개요

o 일 자: 2020. 4. 17.(금요일)

o 방 법: 온라인심의

o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
- 심의위원: 최승수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성호 위원, 박재화 위원, 박정인 위원

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**의결안건**〉 ※ 안건 검토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·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#### Ⅱ. 회의내용 및 결과

-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83건(안건번호 제2020-10966호~11025호)
 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 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

#### 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안건번호 제2020-10966호~11025호(83건의 게시물)는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방송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- B 위원: 본 사건은 웹하드사이트(◆◆◆◆, ♣♣♣♣ 등)에 불법복제물(방송)들을 불법 공중송신한 사건으로 당해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의견임.
- C 위원: 본 심의 대상 60개의 안건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여 영상 저작물 83개를 불법 복제하여 공중에 영리를 위해 전송하는 것이다. 자료를 통해 확인해볼 때 영리 목적으로 공중에 전송한 사실이 있고 저작물의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위원회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시정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.
- D 위원: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건들은 2020년 방송 된 방송콘텐츠에 관한 사안들로서, 그 중에는 예컨대 방송 슬기로운 의사생활(2020), 방송 방법(2020)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번 불법 복제 전송물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### 2020년 제58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

##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0. 4. 17.

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

위원 박정인